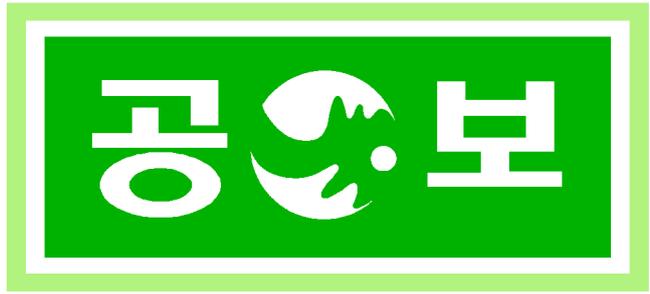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99 호 2014. 7. 28(월)**

##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2호[도로명주소 고시] .....2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47호[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안)에 따른 공고] .....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span style="font-size: small;">☞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span> </li> </ul>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22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로 236-7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25-3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36-7	2014-07-28	호계동주소재하는도로특별정동인호계동의이름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환지구 238 1L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881	2014-07-28	울산의산업을활성화시키지는취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6-18	
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57-2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15-1	2014-07-28	화동은화봉의옛지명이머산세기결점이늘어진곳에서리리마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환지구 978 4L	울산광역시 북구 명환7길 17	2014-07-28	옛지명이머천제도시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이물동 33-1	울산광역시 북구 이름2길 5-1	2014-07-28	이름마을사업이진행중이곳에위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달진동 462, 467	울산광역시 북구 농사로 387	2014-07-28	메진지명의농사에위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9	지번추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47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안)에 따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고자 같은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28.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건 명 :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2. 주요내용
  - 가. 계획의 범위 : 울산광역시 관내 개발제한구역(269.739km<sup>2</sup>)
  - 나. 계획기간 : 2012 ~ 2016년
  - 다. 주요내용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m <sup>2</sup> )	건축 연면적 (m <sup>2</sup> )	비 고
2	농소공영차고지	-	울산광역시장	북구 창평동 813-3번지 일원	17,300	2,201.83	
5	상안중학교	-	울산광역시 교육감	북구 상안동 838-1번지 일원	14,667	7,279.49	
6	공군 제8146부대	-	국방부장관	북구 어물동 1200-1 (신272-2)번지 일원	87,434	5,733.39	

- 라. 관련도면 및 세부내용 :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4. 열람기간 : 공고일(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기타 상세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